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5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이수진 · 남인순 · 송옥주
서미화 · 백혜련 · 전종덕
김문수 · 이원택 · 이건태
전진숙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의 제목 중 “현황”을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형태”를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한다.

1.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3. 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6(고용형태 <u>현황</u>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u>등에 관한</u> <u>현황</u> 공시) ① ----- ----- ----- <u>다음</u> <u>각</u> <u>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u> <u>의 고용형태별 · 성별 고용현황</u>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매년 <u>근로자의 고용형태</u> <u>현황</u> 을 공시하여야 한다.	1. <u>직종 · 직무 · 직급 · 근속연수</u> <u>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u> <u>인원 및 성비 현황</u>
<신 설>	2. <u>직종 · 직무 · 직급 · 근속연수</u> <u>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u> <u>임직원 보수 현황</u>
<신 설>	3. <u>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u> <u>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u> <u>다)</u>
<신 설>	4. <u>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u> <u>비 및 성별 근속 현황</u>
② 제1항에 따른 <u>고용형태</u> , 공 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u>고용형태 등</u> <u>에 관한 현황</u> ----- ----- -----.